의안번호	제 486 호
의 결	2010년 4월 일
연 월 일	(제 289 회)

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0년 4월 6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486 제출연월일 : 2010년 4월 6일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O 도금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, 재 약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도금고 약정기간을 확대 조정하고,
- ○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제정 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 지정방법 추가 신설 (안 제4조제1항제3호)
 - 도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
- 도금고 약정기간 확대 (안 제5조)
 - 2년 → 3년 (1년)
-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기능 조정 (안 제7조제1항·제2항)
 - 심의 → 심의 · 평가
-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 (안 제7조제3항)
 - 9명 이내 → 9명 이상 12명 이하
-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의사 및 의결정족수 신설 (안 제7조제5항)
 -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
- 금고지정 금융기관 지정통지 후 약정서 체결기간 연장 (안 제9조제2항)
 - 10일 이내 → 20일 이내 (10일 연장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・구조문대비표 : 붙임

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금고취급금융기관(이하 "금고"라 한다)"을 "금고"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금고"란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, 각종 세입금의 수납, 세출금의 지급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형식을 빌어 지정한 「은행법」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.
- 2. "경쟁방법"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·심의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수의방법"이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"금고지정"이란 금융기관 중 충청북도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5. "금고약정"이란 도지사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,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 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.
- 6. "일반회계"란 「지방재정법」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.
- 7. "특별회계"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 분하여 계리(計理)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

회계를 말한다.

- 8. "기금"이란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
- 제4조의 제목 "(금고지정)"을 "(금고지정 방법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제1호,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1.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 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
 - 2.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. 단,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.
 - 3. 도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
 - ② 금고는 일반회계의 경우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 회계 및 기금은 1금고 지정 또는 설치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.

제5조 중 "2년"을 "3년"으로 한다.

- 제6조의 제목 "(지정기준)"을 "(금고지정 평가기준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, 제3호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- 2.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
 - 3. 지역주민이용 편의성
 - 5.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추진능력

제7조제1항 중 "심의·의결"을 "심의·평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

의 부분과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"위원회"를 "심의위원회"로 하여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금고지정 방식을 심의·의결"을 "금고지정 방법을 심의"로 하여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평가한다.
- 1.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
-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단,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제외하고, 민간전문가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포함 과반수로 한다.
 - 1. 충청북도의회 의원 2명
- 3. 충청북도 소속 관계공무원
-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제1항 중 "도지사는"을 "도지사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금융기관에 배포하거나 열람토록 할 수 있다"를 "금융기관에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"10일"을 "20일"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금고약정 기간은 종전 조례에 의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(이하 "금고"라 한다)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, 효율성,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하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"금고"라 함은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, 각종 세입금의 수납, 세출금의 지급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약정형식을 빌어 지정한 「은행법」에 의한금융기관을 말한다.

- ② "경쟁방법"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·심의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③ "수의방법"이라 함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④ "금고지정"이라 함은 금융기관 중 충청북도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 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⑤ "금고약정"이라 함은 도지사와 금고 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한다.

개 정 안

제1조(목적)
금고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금고"란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 "라 한다)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, 각종 세입금의 수납, 세출금의 지급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 형식을 빌어 지정한 「은행법」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.
- 2. "경쟁방법"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·심의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다.
- 3. "수의방법"이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"금고지정"이란 금융기관 중 충청북도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5. "금고약정"이란 도지사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,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.
- 6. "일반회계"란 「지방재정법」제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. 7. "특별회계"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세입・세출로서 일반세입・세출과 구분하여계 기원을 때에 한

현 행	개 정 안
	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. 8. "기금"이란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「지방자치법」제142조 또는 다른 법
	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·운용하는 자 금을 말한다.
제4조(금고지정) ① 도지사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있다.	제4조 (금고지정 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
1. <u>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</u> <u>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</u> <u>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</u>	1. <u>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</u> <u>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</u>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 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 는 경우
2. <u>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</u> 재지정하는 경우. 단,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 을 초과하지 못한다.	2.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. 단,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.
〈신설〉 ② 금고는 일반회계의 경우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설치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 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.	3. 도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② 금고는 일반회계의 경우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1금고 지정 또는 설치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.
제5조(약정기간) 지정된 금고와의 약 정기간은 <u>2년</u> 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 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 다.	제5조(약정기간)
제6조(지정기준)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 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 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 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	제6조(금고지정 평가기준) (현행과 같음)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	1.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구조의 안정성 2. 충청북도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 3. 주민이용의 편의 및 지역사회기여도 4. 금고업무 관리능력 5. 충청북도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능력	2.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3.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. (현행과 같음) 5.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추진능력
제7조(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금고 지정시 필요한 사항 을 <u>심의·의결</u> 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 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	제7조(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 1.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2. (생 략) 3. (생 략) 4. (생 략)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 은 행정부지사로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	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평가한다. 1.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하고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단, 평가대상 금융기관 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고, 민 간전문가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포함 과
1. 충청북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. (생 략) 3. 충청북도 소속 관계공무원 2인 ④ (생 략) 〈신 설〉	반수로 한다. 1. 충청북도의회 의원 2명 2. (현행과 같음) 3. 충청북도 소속 관계공무원 ④ (현행과 같음)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 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 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 ⑥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에는 심의위원회에서 <u>금고지정방식을</u> 심의·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.	(조)
제8조(지정절차) ① <u>도지사는</u> 금고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	제8조(지정절차) ① 도지사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

현 행	개 정 안		
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			
고약정만료 최소 3월전까지 도보 등에			
공고 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			
한다.			
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	②		
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평가 기준			
등을 대상 <u>금융기관에 배포하거나 열람</u>	금융기관에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		
<u>토록 할 수 있다.</u>	있도록 하여야 한다.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		
제9조(금고 약정) ① (생 략)	제9조(금고 약정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	2		
받은 날부터 <u>10일</u> 이내에 금고약정서에	<u>20일</u>		
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	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		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

- **제9조(회계의 구분)**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- ②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계리(計理)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설치할 수 있다.
- 제77조 (금고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은행법」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, 시·도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·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 - ③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

제102조 (금고업무의 약정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,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

다.

②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**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** 금융기관의 금고업무취급능력,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기금"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다만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. <개정 2007.5.11>

□ 지방자치법

- 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 - 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- □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
- ☐ 행정안전부예규 제 244호 (2009. 6. 10. 제정)

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



행정안전부

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

1. 총 칙

[] 목 적

○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(이하 "자치단체"라 한다.)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를 정하고자 함.

② 용어의 정의

- ① 금고(지방재정법 제77조)
 -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"자치단체의 장"이라 한다.)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, 각종 세입금 의 수납,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함.
- ② 일반회계(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)
 -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함.
- ③ 특별회계(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)
 - 『지방공기업법』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계리(計理)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설치한 회계를 말함.
- ④ 기금(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)
 -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『지방자치법』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함.

⑤ 금고지정

-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 하는 것을 말함.

⑥ 금고약정

-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.

③ 적용범위

- 본 기준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함.
-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 하지 아니함.

④ 금고의 수

- 일반회계 : **1금고 지정**(단일금고)
- 특별회계 : 1금고 지정 또는 특별회계별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 지정 가능
- 기금회계 : **1금고 지정 또**는 기금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**별도의 금고** 지정 가능
- ※ A(특별·기금회계)- 갑은행, B(특별·기금회계)- 을은행, C(특별·기금회계)-병은행
- ※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·운용하여 야 하며,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

5 금고의 약정기간

- 금고의 약정기간은 **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**으로 정함.
-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.

2. 금고지정 방법

1 개 념

-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(隨意)방법이 있으며,
 -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 · 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
 - **수의방법**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하는 것을 말함

② 금고지정 방법

- 금고지정은 **경쟁방법**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. 다만, 다음 각호의 경우 에 한하여 **수의방법**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.
 - 가.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
 - 나.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 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
 - 다.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 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 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라.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금 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 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(단,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 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함)

3. 금고지정 평가기준

Ⅱ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

-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<별 표>의 기준으로 평가함.
 - 가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(30)
 - 나.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(15)
 - 다. 지역주민이용 편의성(15)
 - 라. 금고업무 관리능력(15)
 - 마.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(10)
 - 바. 기타사항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 으로 정하는 사항(15)
- <별 표>의 기준 중 **항목 6(기타사항)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**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.
 - 가.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(예시 ① 참조)
 - 나. **항목 6**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(15점)을 항목 1, 2, 3,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(예시③ 참조)
 - 다만, 항목 2(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)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.
 - 항목 5(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)에는 세부 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,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.
- <별표>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

- 을 준수하여 조례(규칙)으로 정하여야 함.
- 가.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,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·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(예시② 참조)
- 나.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%이상으로 하여야 하고,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.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 분하여야 하며, 세부항목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(예 시② 참조)
 - 다만, 항목 2(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), 항목 5(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)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0.5점에서 최소 0.1점 구간내에 있어야 함

(예시①) 항목 6을 정하는 경우

지 침	조례 또는 규칙안 예시	
6. 기타사항(15)	6. 기타사항(15) - 항목 가. 000(5) 나. 000(5) - 세부항목 다. 000(5)	

(예시②)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

지 침	조례 또는 규칙안(예시)		
1.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(30)	1.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(30)		
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(10)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(10)		
- 국외평가기관(6)	- 국외평가기관(6)		
	(1순위 6.0점, 2순위 5.0점, 최저순위3.6점)		
나. 주요경영지표 현황	나. 주요경영지표 현황		
- BIS 자기자본비율(안전성, 7점)	- BIS 자기자본비율(안전성, 7점)		
	(BIS비율 10% 이상인 경우, 만점처리가능		
2.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(15)	2.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(15)		
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(6)	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(6)		
	(1순위 6.0점, 2순위 5.5점, 최저순위 3.6점)		

(예시③) 항목 6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

지 침	조례 또는 규칙안(예시)		
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(30점) 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(10) 국외평가기관(6점) 국내평가기관(4점) 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(20) BIS 자기자본비율(7) 무수익여신비율(7) 자기자본이익율(6) 2.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(15점)	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(35점) 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(10) 국외평가기관(6점) 국내평가기관(4점) 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(25) BIS 자기자본비율(9) - 추가배점 무수익여신비율(7) 자기자본이익율(6) 대손충당금적립율(3) - 항목추가 2.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(18점) 		
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(6) 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(5) 다. 자치단체 대출금리(4)	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(6) 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(5) 다. 자치단체 대출금리(4) 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(3) - 항목추가 ※ 추가배점 불가		
3. 지역주민이용 편의성(15점) 가.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(5) 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(5) 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중진방안(5)	 3. 지역주민이용 편의성(19점) 가.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(5) 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(9) - 추가배점 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(5) 		
4. 금고업무 관리능력(15점) 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(5) 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(5) 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(5)	4. 금고업무 관리능력(18점) 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(5) 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(5) 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(5) 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(3) - 항목추가		
 5.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(10) 가.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(5) 나.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(5) 	 5.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(10) 가.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(5) 나.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5) ※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		

②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

○ 지역실정,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

③ 『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』관련 유의사항

①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된 경우

-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『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』상의 기부금 품에 해당하지 않음
 - 이 경우, 출연금 등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
 - * 출연 등은 약정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등 금고지정과 상호 의존관 계가 있어야 됨

── <법제처 유권해석('02.5.31)> -

○ 금고지정약정에 출연금이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함

②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

○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, 금융기관인 금고에서 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『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』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'기부심사위원회'심의 후 처리

③『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』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

-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 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
 -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.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

4. 금고의 지정절차

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

-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.
 - ※ 자치단체 구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로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 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
- **심의위원회**는 다음 사항을 **심의 · 평가**함.
 - 가.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
 -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 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
 - 나.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·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-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 의할 수 있음
 - 다.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
 - 라.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-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.
- 위원은 대학교수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지방의원 등 관련분 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(과반수이상)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,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.
- 위원장 및 위원 선정, 위촉 기간, 위원 수,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

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.

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

-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 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.
-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함.

③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

○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 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・평가한 후,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, 자 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.

4 금고의 지정

○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함.

5. 금고약정 및 해지

Ⅱ 금고약정

-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 체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.
-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**20**일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.
-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, 각종 법령·조례·규칙의 준수의무, 세입수 납금의 송금 및 이체, 일시차입 및 기채, 배상 및 변상책임, 비용부담 및 수수료, 계약해지, 계약 조문해석,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.

② 금고약정의 해지

-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 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.
-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.

6. 보 칙

1 금고운용 보고

- 자치단체의 장은 일반·특별회계·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 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·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보 고토록 하여야 함.
-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, 예치기간, 금융상품별 수익률,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.

2 조례 등 위임

○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 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.

7. 부 칙

○ 이 예규는 **2009년 6월 10일**부터 시행한다.

<별 표>

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

	항 목	세 부 항 목	배 점	비고
	계		100	
		30		
	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	(10)	
1	그 0 키키 이 테네이커	- 국외평가기관(6점)		
1.	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	- 국내평가기관(4점)		
	안정성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	(20)	
		- BIS 자기자본비율 (안정성, 7점)		
		- 무수익여신비율 (건전성, 7점)		
		- 자기자본이익율 (수익성, 6점)	15	
			15	
2.	자치단체에 대한	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(6)	
	대출 및 예금금리	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. 자치단체 대출금리	(5)	
		어. 자시인세 대불합니	(4) 15	
		의 기계기위취 미 기선조미시 이 때기기		
3.	지역주민이용 편의성	가.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	(5)	
		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(5) (5)	
-		नः विश्वासन सम्धन वर्षवर		
			15	
4.	금고업무 관리능력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(5)	
		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(5)	
		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	(5)	
5.	지역사회기여 및 자		10	
		가.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	(5)	
추진 능력	주진 능력	나.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	(5)	
6.	기타 사항	자치단체 추가항목	15	